

수원지방법원 2020. 12. 10 선고 2019가단562486 판결 [설비공사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변호사 박병주

피 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

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

변론 종결 2020. 10. 29

판결 선고 2020. 12. 10

주 문

1.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37,400,000원임을 확정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O 원고의 대표자인 D은 'A'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. 11. 25. B 주식회사(이하 'B'라 한다)와 사이에 '이중 커팅 자동설비'에 관하여 대금 9,350만 원(부가가치세포함)의 공급계약(이하 *이 사건 제1공급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이를 납 품하였다.

O D은 2015. 2. 5. 반도체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고, 원고는 2018. 1. 8. B와 사이에 '세정기 개선,크린룸 부대설비 설치,에칭실 부대설비 설 치,작업발판 철거'에 관하여 대금 2,695만 원(부가가치세 포함)의 설비공급계약(이하 이 사건 제2공급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이를 납품하였다.

O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공급계약의 미지급 대금을 양수하였고, B는 원고 에게 '이 사건 제1공급계약의 미지급 대금 3,740만 원과 이 사건 제2공급계약의 미 지급 대금 2,695만 원의 합계 6,435만 원을 지급하겠다'는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작성하 여 교부하였다.

O B는 위 6,435만 원 중 이 사건 제2공급계약의 미지급 대금 2,695만 원을 지급하 였다.

O B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. 3. 31. 대전지방법원 2020회합5008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,같은 날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.

O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제1공급계약의 미지급 원금 3,740만 원을 회생 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, 피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 로 부인하였다.

O 원고는 채권조사기간 말일(2020. 6. 2.)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0. 7. 1.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할 것을 신청하였고, 같은 날 원고의 B에 대한 회생채권이 3,740만 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

다.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내지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급계약의 미지급 대금 3,7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,원고의 B에 대한 회생채권은 3,740만 원임을 확정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민지